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0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1월 04일

발 의 자 : 신정호, 강대호, 김기대,
김기덕, 김상훈, 봉양순,
송명화, 송재혁, 오현정,
우형찬, 유정희, 임만균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나, 실제 급수공사비는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와 공사 연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음.

이에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인 ‘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’ 문구를 삭제하고,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○ 제한규정인 ‘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’ 문구를 삭제함(안 제7조제1항)
-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에 ‘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’를 신설함(안 제7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”을 “그 금액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사비의 계산방법)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, <u>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공사비의 계산방법) ① ----- -----, 그 <u>금액-----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</u></p>